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강 정 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일간신문은 이 날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임을 기념하여, 민주국가에서의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 시민의 준법정신을 역설하는 칼럼을 실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관행은 아마도 제헌절의 통과 의례인 듯싶기도 하다. 그리고 이 통과 의례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다. 칼럼의 필자들은 시민의 준법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말을 상기시킨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떠올린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도덕 및 철학 교육 때문이리라. 대체로 그

내용은 부당한 재판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가 친구로부터 국외탈출을 권유받았지만, 비록 악법이라 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꺼이 독약을 마셨다는 것이다. 교과서에는 현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엄숙한 장면이 종종 삽화로서 덧붙여진다. 그 결과 '악법도 법이다'라는 우리의 법관념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논변,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순교에 의해 완성되었다. 곧 소크라테스의 '논변', '권위' 그리고 '순교'라는 삼위일체를 통해 완성된 셈이다.

필자는 4년 전에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발표대회에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에 관한 것처럼 잘못된 해석이 법치주의와 시민의 준법의무를 고취시키는데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적인 독재정권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식의 글이 그 후에도 심심치 않게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본다. 주입식 교육의 엄청난 효과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었다면, 우리 국민은 소크라테스의 모범을 따라 분명히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 하에서도 법치주의와 준법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암기된 표어, 박제화된 지식이지, 실천적 지식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면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언이 이 나라에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의 실현에 과연 효율적으로 작용해 왔는가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곧 군부정권이든 문민정부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법의 제정이

나 집행에서 관존민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법치주의의 부재와 준법정신의 실종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많은 악법들이 산재해 있다. 그간 우리의 현실과 관행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도입된 선진 외국법제, 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이나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집행 당국의 즉흥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제정된 법, 일부 이익집단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공익을 외면한 채 제정된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권의 당리당락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정된 정치관계법—가장 중요하게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 포함하여—등 많은 악법들이 양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법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정부 관리들 역시 내심으로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리들은 자신들이 공직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문책이 두려기 때문에, 또는 그들 스스로가 고압적인 관존민비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법을 개정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그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또는 현실의 관행을 무시하고 제정된 악법들이 존속되어 왔고, 일반 시민은 엄

격한 법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일반 시민들은 법의 준수를 가급적 기피함으로써, 곧 법을 위반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당국의 협조나 묵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들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법집행 당국의 인치(人治)에 호소하곤 했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열려져 있는 수단은 부패와 비리 등을 유발함으로써 법의 적용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법규위반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으며, 법을 성실히 지킨 시민은 통상 손해를 보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일을 처리하면서 법규정을 위반했고, 일반 시민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다면, 전자는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것이며, 후자는 그것을 조장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악법은 물론 양법(良法)의 권위마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집행 당국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처벌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은 과거에 많은 위반행위가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위반을 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위반 사실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억울해하거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당국 역시 법규위반이 만연된 풍토를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삼스럽게 법규위반 행위를 색출하여 처벌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 경우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또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당국의 법집행 행위는 '표적사정'이나 '과썸죄' 또는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법문화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즉, 근대적인 법치문화가 공식적인 현실을 지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집단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의 지배나 준법정신이란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곧 법이란 지배자의 입장에서 '미운 놈을 혼내 주는 수단'으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민의 입장에서 걸릴 염려가 없을 때는 위반해도 무방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연고나 금품 등을 활용하여 법집행을 왜곡시켜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또는 과썸죄로 인해 처벌받다고 생각되는 풍토에서 준법정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당국의 입장에서 법치주의가, 시민의 입장에서 준법정신이 실종되고 말았다.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의 실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주적인 절

차를 통해 일반 국민이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다스리고, 그들 자신 역시 일반 시민으로서 그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악덕 공직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준수하는 양법을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위반하는 암체 시민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준엄한 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시민

과 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이들을 과실죄로 처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악법의 개폐작업 역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야말로 법의 권위를 확립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강정인/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등이 있고, “기독교·유교와 민주주의”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